**세 법**

**2/16**

**제1교시**

|  |
| --- |
| **※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1. 답안은 문제 순서대로 작성할 것  2. 계산문제는 계산근거를 반드시 제시할 것  3. 답안은 원단위로 작성할 것  4. 모든 물음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부담 최소화를 전제하고 관련 자료·증빙의 제출 및 신고·납부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가정한다. |

**【문제 1】(10점)**

**(물음 1)** “서류의 송달”이란 과세관청이 국세에 관한 처분 및 통지에 관한 서류를 처분대상자 등에게 보내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관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단, 1)과 2)는 상호 독립적이다.

1) 세무공무원인 김국세씨는 동강산업㈜의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방문당시 이 회사의 이사나 기타 직원(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로 가정함)들이 서류의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김국세씨가 선택할 수 있는 적법한 서류의 송달방법에 대하여 세 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2) 국세기본법 상 서류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를 송달의 방법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물음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전적(事前的) 권리구제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과세전적부심사를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네 가지를 열거하시오.

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중 세 가지만 열거하시오.

**【문제 2】(5점)**

다음 자료를 읽고 수증자와 증여자를 밝히고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KW는 증자를 위하여 1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구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하였으나 일부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포기하지 않은 주주들에 대하여 재배정이 이루어졌다.  ① 증자 전 주주별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주주명 | 보유주식수 | 지분비율 | | 홍길동 | 40,000주 | 40% | | 김대원 | 20,000주 | 20% | | 홍미진 | 30,000주 | 30% | | 박이안 | 10,000주 | 10% | | 계 | 100,000주 | 100% |   ② ㈜KW는 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니다.  ③ 홍미진은 홍길동의 딸이며 이 이외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주주는 없다.  ④ 김대원과 홍미진이 실권함에 따라 실권주를 홍길동과 박이안에게 지분비율대로 재배정하였다.  ⑤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은 20,000원이고 증자 시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은 40,000원이다. |

**세 법**

**제1교시**

**3/16**

**【문제 3】(5점)**

다음은 ㈜ACE의 제10기 사업연도(2006.1.1～2006.12.31) 기부금 관련 자료이다. 당기에 필요한 세무조정을 행하고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① 결산서 상 당기순이익은 400,000,000원이고, 법인세비용은 30,000,000원이다.  ② 당기의 손익계산서 상 기부금으로 비용 계상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단위 : 원) | | | 구 분 | 금 액 |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50,000,000 | |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한 금액 | 30,000,000 | | 불우이웃돕기성금 | 20,000,000 | |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 | 10,000,000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40,000,000 |   ③ 이월결손금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단위 : 원) | | | | 발생연도 | 대차대조표 상 | 세무 상 | | 3기(1999년도) | 60,000,000 | 30,000,000 | | 4기(2000년도) | 80,000,000 | 45,000,000 | | 5기(2001년도) | 90,000,000 | 60,000,000 | | 계 | 230,000,000 | 135,000,000 |   ④ 제9기의 세무조정 시 기부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단위 : 원) | | | 구 분 | 금 액 | |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20,000,000 | |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 | 12,000,000 |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20,000,000 | | 비지정기부금 부인액 | 8,000,000 |   ⑤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사항 중 당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당기의 세무조정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가정한다. |

**【문제 4】(30점)**

공인회계사 “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진(이하 “회사”라고 함)의 제10기 사업연도(2006. 1. 1 ～ 2006. 12. 31)의 기말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음 가정을 기초로 하여 아래의 각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기본가정)  ① 다음의 각 물음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하에서 회사의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② 회사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기업(제조업)에 해당하며, 상장되지 않은 법인이다. |

**(물음 1)**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급여와 관련한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세무조정을 하시오. 답안은 계산근거를 작성한 후, 세무조정 내용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의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또한, 유보금액의 변동내역을 과목, 기초잔액, 증가, 감소, 기말잔액으로 표시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1>  ① 당기 말 현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추계액 : 500,000,000원  ② 인건비 내역 (세법 상 손금 부인되는 금액은 없음)   |  |  | | --- | --- | | 구 분 | 인건비 | | 1년 이상 계속 근무자 | 700,000,000원 | | 1년 미만 근무자 | 100,000,000원 | | 합 계 | 800,000,000원 | |

**세 법**

**4/16**

**제1교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장부 상 퇴직급여충당금 변동 내역   |  |  |  |  | | --- | --- | --- | --- | |  |  |  | (단위 : 원) | | 적 요 | 금 액 | 적 요 | 금 액 | | 당기지급주) | 130,000,000 | 전기이월 | 400,000,000 | | 기말잔액 | 500,000,000 | 당기설정 | 230,000,000 | | 합 계 | 630,000,000 | 합 계 | 630,000,000 |   주) 당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13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아래 ⑤에서와 같이 퇴직보험예치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했다.  ④ 당기 말 퇴직금전환금 잔액: 0원  ⑤ 장부 상 퇴직보험예치금 변동 내역 (회사는 퇴직보험에 대해 별도의 충당금을 장부 상 계상하지 않고 있다)   |  |  |  |  | | --- | --- | --- | --- | |  |  |  | (단위 : 원) | | 적 요 | 금 액 | 적 요 | 금 액 | | 전기이월 | 280,000,000 | 당기지급 | 60,000,000 | | 당기추가예치 | 190,000,000 | 기말잔액 | 410,000,000 | | 합 계 | 470,000,000 | 합 계 | 470,000,000 |   ⑥ 전기 말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상 잔액   |  |  | | --- | --- | | (단위 : 원) | | | 과 목 | 금 액 |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 280,000,000 | | 퇴직보험예치금 손금산입(신고조정) | △280,000,000 | |

**(물음 2)**

회사의 대여금 및 차입금과 관련한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세무조정을 하시오. 답안은 계산근거를 작

성한 후, 세무조정 내용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의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2>  ① 당기 말 현재 대여금 계정 명세   |  |  |  |  | | --- | --- | --- | --- | | (단위 : 원) | | | | | 구 분 | 적 요 | 잔 액 | 대여일 | | 갑(개인)주1) | 월정액급여액 범위 내의 일시적인 급여 가불 | 500,000 | 2006.11.30 | | 을(개인)주1) | 무주택자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임차자금으로 대여함 | 10,000,000 | 2005.12.15 | | 병(법인)주2) | 운영자금 일시 대여(연 10.95% 이자수취) | 50,000,000 | 2006.12. 1 | | 정(개인)주1) | 우리사주조합원으로 회사주식 취득자금으로 대여함 | 5,000,000 | 2006.10. 1 |   주1) 상기 개인은 모두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특별한 계약 없이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다.  주2) 병(법인)은 특수관계자로서 대출약정은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나, 연 10.95%의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  ② 당기 중 이자율별 지급이자 금액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단위 : 원) | | | | | 차입금 | 지급이자 | 연이자율 | 비고 | | 사채(私債) | 1,800,000 | 18.00% | 채권자 불분명, 원천징수 안함. | | A저축은행 | 6,000,000 | 14.60% |  | | B은행 | 3,300,000 | 10.95% |  |   ③ 국세청장 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은 9%로 가정한다. |

**(물음 3)**

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세무조정을 하시오. 단, 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아니다. 답안은 계산근거를 작성한 후, 세무조정 내용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의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세 법**

**제1교시**

**5/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3>  ① 회사는 전기 이전에 취득한 유가증권(모두 내국법인이 발행한 것임)에서 배당금 수입이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다. 단, C사로부터의 무상주배당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 상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  |  |  |  | | --- | --- | --- | --- | |  |  |  | (단위 : 원) | | 구 분 | 지분율 | 수입배당금 | 비 고 | | A벤처  (코스닥상장법인) | 3% | 2,000,000 | 현금배당 | | B사  (비상장 자회사) | 100% | 20,000,000 | 현금배당, 재출자계열 법인 없음 | | C사  (주권상장법인) | 5% | 10,000,000 | 무상주배당(상장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 |   ② 취득 후 유가증권 금액의 변동은 없다고 가정하며 당기 말 유가증권 금액 및 자산총액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 분 | 지분율 | 기말잔액 | | A벤처(코스닥상장법인) | 3% | 20,000,000원 | | B사(비상장 자회사) | 100% | 100,000,000원 | | C사(주권상장법인) | 5% | 30,000,000원 | | 회사의 자산 총액 |  | 4,000,000,000원 |   ③ 당기 중 회사의 손금인정 대상 지급이자 금액은 8,000,000원으로 가정한다. |

|  |
| --- |
| ④ 회사는 전기에 남태평양에 위치한 조세피난처에 해외현지법인(회사의 지분율 : 80%, 사업연도: 10. 1 ～ 9. 30)을 설립하였으며, 동 법인의 주 영업은 회사의 제품을 매입하여 유럽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영업은 2006년 1월부터 시작하였으며 2006년 9월 30일 현재 해외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은 USD 350,000 (당기말 현재 기준환율 : USD 1.0 = 1,000원 가정)이나 아직 배당한 적은 없다. 단, 조세피난처에는 법인세·배당소득 원천징수세 등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다. |

**(물음 4)**

다음의 자료는 회사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전기 말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동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세무조정을 하시오. 단,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조정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답하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손금은 세무 상

한도 이내인 것으로 가정한다.

답안은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각각 구분하여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  |  |  |  |
| --- | --- | --- | --- |
| 계정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조정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4>  ①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2005년 12월 31일 현재)   |  |  |  | | --- | --- | --- | | (단위 : 원) | | | | 과목 또는 사항 | 기말잔액 | 비고 | | 재고자산 평가손실 | 100,000,000 | (주1) | | 미수이자 | △2,000,000 | (주2) | | 미지급비용 | 25,000,000 | (주3) | | 판매보증충당금 | 550,000,000 | (주4) | | 통화선도평가손실 | 13,000,000 | (주5) | |

**세 법**

**6/16**

**제1교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대차대조표(2006년 12월 31일 현재)   |  |  |  | | --- | --- | --- | | (단위 : 원) | | | | 계정과목 | 금액 | 비고 | | Ⅰ. 유동자산 |  |  | | 1. 현금예금 | 12,000,000 |  | | 2. 유가증권 | 50,000,000 |  | | 3. 매출채권 | 1,200,000,000 |  | | (대손충당금) | (12,000,000) |  | | 4. 재고자산 | 650,000,000 | (주1) |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130,000,000) | | 5. 미수이자 | 2,500,000 | (주2) | | 6. 기타 | 147,500,000 |  | | Ⅱ. 고정자산 |  |  | |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400,000,000 |  | | 2. 유형자산 | 1,500,000,000 |  | | 3. 기타 | 180,000,000 |  | | 자산총계 | 4,000,000,000 |  | | I. 유동부채 |  |  | | 1. 매입채무 | 800,000,000 |  | | 2. 미지급비용 | 220,000,000 | (주3) | | 3. 판매보증충당금 | 540,000,000 | (주4) | | 4. 통화선도 | 25,000,000 |  | | 5. 기타 | 35,000,000 |  | | Ⅱ. 고정부채 | 720,000,000 |  | | Ⅲ. 자본 | 1,660,000,000 |  | | 부채와 자본 총계 | 4,000,000,000 |  |   ③ 손익계산서(2006. 1. 1 ～2006.12.31)   |  |  |  | | --- | --- | --- | | (단위 : 원) | | | | 계정과목 | 금액 | 비고 | | Ⅰ. 매출액 | 8,500,000,000 |  | | Ⅱ. 매출원가 | 5,900,000,000 |  | | Ⅲ. 매출총이익 | 2,600,000,000 |  | | Ⅳ. 판매비와 관리비 | 1,800,000,000 |  | | Ⅴ. 영업이익 | 8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Ⅵ. 영업외수익 | 100,000,000 |  | | 1. 이자수익 | 5,000,000 |  | | 2. 배당금수익 | 22,000,000 | (주6) | | 3. 외화환산이익 | 3,000,000 |  | | 4. 외환차익 | 2,000,000 |  | | 5. 통화선도 거래이익 | 22,000,000 |  | | 6. 판매보증충당금 환입 | 10,000,000 |  | | 7. 지분법평가이익 | 34,000,000 |  | | 8. 잡이익 | 2,000,000 |  | | Ⅶ. 영업외비용 | 271,000,000 |  | | 1. 이자비용 | 11,000,000 |  | | 2. 외화환산손실 | 55,000,000 |  | | 3. 통화선도 평가손실 | 25,000,000 |  | | 4. 재고자산평가손실 | 30,000,000 |  | | 5. 법인세추납액 | 150,000,000 |  | | Ⅷ.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29,000,000 |  | | Ⅸ. 법인세비용 | 209,000,000 |  | | X. 당기순이익 | 420,000,000 |  |   (주1) 회사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세무 상 선입선출법(원가법)으로 신고 되어 있으며 진부화된 재고에 대해 매년 평가손실을 계상하고 있다.  (주2) 회사의 전기 및 당기 미수이자는 만기가 1년 미만인 예금에 대한 것으로 전액 법인세법 상 원천징수 대상이다.  (주3) 회사의 당기 말 현재 미지급비용 명세를 분석해 본 결과 추정에 의해 계상한 영업직원의 성과급 상여 3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당기 말 현재 확정된 금액이다. 전기 미지급비용은 당기에 모두 지급 완료 되었다.  (주4) 회사는 제품 판매 후 1년까지 무상보증을 해주고 있으며 매년 매출액 대비 일정율의 판매보증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주5) 통화선도계약은 만기가 6개월이다.  (주6) 배당금수익은 적정하게 익금불산입 하였으므로 추가로 조정하지 않는다. |

**세 법**

**제1교시**

**7/16**

**(물음 5)**

회사의 세무조정 사항을 대부분 마무리한 공인회계사 “갑”은 회사의 제10기 납부세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조세감면·세액공제·준비금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에 주어진 자료에 근거하여 **당기의 법인세·소득할 주민세·농어촌특별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차감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시오.

답안은 (1) 회사에 적용 가능한 조세감면·세액공제· 준비금 등의 검토 결과 선택한 사유를 기술하고, (2) 최저한세 검토 결과 배제되는 항목·금액 및 사유를 기술하고, (3) 차감납부할 세액을 기술하시오.

|  |
| --- |
| <자료 5>  1. 회사의 일반사항 및 가정  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기업(제조업, 부품소재산업)으로서 이월결손금은 없다.  ② 당기 매출액 : 85억원  ③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기업) : 산출세액의 15%  ④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 : 매출액의 5%까지 설정 가능한 것으로 한다.(회사는 당기에 처음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 설정을 고려 중이며, 향후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준비금은 전액 사용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초과발생액의 50%와 당기발생액의 15% 중 큰 금액  ⑥ 임시투자세액공제 : 투자액의 7%(회사의 기계장치 투자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중복 적용 여부는 세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⑧ 회사의 향후 당기순이익 및 과세표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월되는 세액공제가 있다면 전액 이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⑨ 전기에서 이월된 세액공제는 없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세액공제나 감면 및 조세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⑩ 기타 세법 상 필요한 절차는 적법하게 수행한다고 가정한다.  2. 각사업연도소득금액(준비금 손금산입 전)   |  |  | | --- | --- | | 구 분 | 금 액 |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420,000,000원 | | 익금산입 | 550,000,000원 | | 손금산입 | 145,000,000원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주) | 825,000,000원 |   주) 전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이다.  3. 연구 및 인력개발비  ①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 : 300,000,000원  ② 당기 발생액 : 450,000,000원  4. 당기 중 기계장치 투자액 : 700,000,000원(전액 신규 투자임)  5. 기납부세액  ① 중간예납세액 : 12,000,000원  ② 원천납부세액 : 500,000원 |

**【문제 5】(5점)**

A법인은 2006년 8월 10일자로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동 합병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자 료>  1. A법인은 B법인의 주주들에게 A법인의 주식 5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1주당 시가 8,000원)와 합병교부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A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B법인의 주식 10,000주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편 A법인은 동 주식에 대해서도 1주당 A법인 주식 1주를 교부하였다.  ① 2003년 7월 15일에 4,000주를 32,000,000원에 취득  ② 2004년 10월 20일에 6,000주를 58,000,000원에 취득  3. 합병등기일 현재 B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편 합병등기일 현재 B법인의 세무상 유보잔액의 합계액은 20,000,000원이다.  ① 자 본 금 : 300,000,000원  ② 자본잉여금 : 50,000,000원  ③ 이익잉여금 : 30,000,000원  4. 합병등기일 현재 B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월공제기간 경과분 : 50,000,000원  ② 이월공제기간 미경과분 : 80,000,000원  5. A법인과 B법인은 모두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며, A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

1) B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2)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확정신고절차를 설명하시오.

**세 법**

**8/16**

**제1교시**

**【문제 6】(25점)**

다음은 거주자인 K씨의 2006년 귀속 소득세 신고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각 물음에 답하시오.(단, 각 물음에 대하여 답안을 먼저 제시하고, 그 하단에 계산근거를 제시하시오)

|  |
| --- |
| (기본가정)  ① <자료1>부터 <자료4>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한 각각 독립적인 상황으로 가정한다.  ②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와 증빙은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한다.  ③ 자료에 제시된 모든 소득금액(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자료>  ① 근로소득공제액(일부)   |  |  | | --- | --- | | 총급여액 | 공제액 |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2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 | 4,500만원 초과 | 1,3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 5% |   ②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일부)   |  |  | | --- | --- |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   ③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  | | --- | --- |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 1,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8%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80만원+(과세표준-1,000만원)×17% |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590만원+(과세표준-4,000만원)×26% | | 8,000만원 초과 | 1,630만원+(과세표준-8,000만원)×35% | |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자료 1>  2006년 귀속 금융소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 10,000,000원(2006년 중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06년 말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 2,000,000원은 제외된 금액임)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9,000,000원(1997년 3월에 가입하여 2006년 6월 말일자로 탈퇴함)  ③ 국외은행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 : 3,000,000원(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함)  ④ 선박투자회사로부터의 현금배당액 : 15,000,000원(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은 5억원임)  ⑤ 인적회사로부터의 현금배당액 : 20,000,000원(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인적회사임)  ⑥ 비상장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 : 10,000,000원(자기주식소각이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본전입 함에 따라 교부받은 무상주임)  ⑦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의 현금배당액 : 30,000,000원(주식보유기간은 2년이며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5억원임) |

1) 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2)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3)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액(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시오.

**세 법**

**제1교시**

**9/16**

**(물음 2)**

<자료 2>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자료 2>  K씨는 S은행(주권상장법인) 국외지점에서 지점장(임원이 아님)으로 재직하던 중 2006년 6월 30일자로 퇴직하였다. K씨의 S은행 입사일자는 1997년 3월 1일이다. S은행의 제35기 사업연도는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제35기 정기주주총회는 2006년 3월 10일에 개최되었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받은 급여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급여 및 일반상여금 42,000,000원  (6월분 급여 3,000,000원은 7월 10일에 지급받음)  ②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8,000,000원  (제35기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것임)  ③ 자녀학자보조금 5,000,000원  (장남의 대학교 1학기 등록금 납부액 관련 보조금)  ④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6,000,000원  ⑤ 인정상여 4,000,000원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하여 S은행의 제35기 법인세 세무조정 시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임)  ⑥ 본인 부담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회사 대납액 1,000,000원  (본인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금액임)  2. 2006년 6월 30일자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일시금 68,000,000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퇴직금전환금 5,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

|  |
| --- |
| ②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반환일시금 30,000,000원  (이 중 1997년 3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불입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60%임)  ③ 이사회 특별결의에 의한 퇴직위로금 10,000,000원  ④ 명예퇴직수당 20,000,000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임) |

1) ① 2006년 귀속 총급여액과 ②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하시오.

2) 명예퇴직수당 20,000,000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된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K씨가 부담할 소득세의 순증가액(또는 순감소액)을 계산하시오. 단, 종합소득공제액은 5,500,000원으로 가정한다.

**(물음 3)**

**<자료 2>와 <자료 3>을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단, 총급여액은 50,000,000원, 근로소득금액은 30,000,000원으로 가정한다.

|  |
| --- |
| <자료 3>  1. K씨(남성, 53세)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51세, 국내은행예금이자만 5,000,000원 있음), 장녀(28세, 소득 없음, 장애인)와 장남(24세, 소득 없음)이 있다.  2.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보험료 및 의료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액 신용카드에 의해 지출되었다. |

**세 법**

**10/16**

**제1교시**

|  |
| --- |
| ①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600,000원  ② 장남의 생명보험료(보장성보험) 300,000원  ③ 장녀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200,000원  ④ 본인의 종합건강진단비용 2,000,000원  ⑤ 배우자의 치료용 의약품 구입비용 1,000,000원  3. 기타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본인의 1월부터 6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 8,000,000원  (국외사용액 2,000,000원, 자동차대여료 500,000원 포함)  ② 배우자의 1월부터 6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 4,000,000원  (아파트관리비 1,500,000원, 학원수강료 700,000원 포함)  4.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부금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편 K씨는 200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특례기부금 3,000,000원을 한도초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바 있다.  ①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 2,500,000원  ②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1,600,000원  ③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500,000원  ④ 사립학교 장학금 기부금 5,500,000원  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3,500,000원 |

1)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액을 계산하시오.

2) 연말정산시 특별공제액 중 ① 보험료공제액, ② 교육비공제액, ③ 기부금공제액, ④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각각 계산하시오.

3) 근로소득금액 30,000,000원 이외에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이 50,000,000원(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 40,000,000원 포함) 있다고 가정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공제액을 계산하시오.

**(물음 4)**

<자료 4>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4>  K씨의 부동산임대 및 양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 및 부수토지(등기자산)의 임대현황  ① 임대기간 : 2004년 7월 1일 ～ 2006년 6월 30일  ② 선세금 : 임대기간 개시일에 선세금 24,000,000원을 일시에 수령하였다.  ③ 임대보증금 : 100,000,000원(전액 차입금 상환에 소요됨)  ④ 관리비 : 매월 200,000원(전기요금 50,000원 포함)을 수령하였으며, 1월부터 6월까지 전기요금 실제 납부액은 200,000원이다.  ⑤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7.3%로 가정한다.  ⑥ 상가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구 분 | 취득일자 | 실지취득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 상가건물 | 2004.5.25 | 80,000,000원 | 60,000,000원 | | 부수토지 | 2001.3.10 | 50,000,000원 | 40,000,000원 |   ⑦ 상가건물 및 부수토지의 임대와 관련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며, 장부에 계상한 2006년 상가건물 분 감가상각비는 4,000,000원이다. 상가건물에 대한 신고내용연수는 20년이며,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2004년과 2005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각각 1,000,000원과 2,000,000원이다. |

**세 법**

**제1교시**

**11/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상가건물 및 부수토지의 임대와 관련하여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감가상각비 이외의 기타필요경비는 1,724,000원(시부인 후 금액)이다.  2. K씨는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 2006년 9월 13일에 상가건물 및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타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용)는 없다.   |  |  |  |  | | --- | --- | --- | --- | | 구 분 | 실지양도가액  (일괄양도가액)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감정가액주) | | 상가건물 | 200,000,000원 | 90,000,000원 | 100,000,000원 | | 부수토지 | 90,000,000원 | 150,000,000원 |   주) 2006년 7월 20일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임 |

1) 2006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2) 상가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부수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계산하지 말 것)

**세 법**

**12/16**

**제1교시**

**【문제 7】(20점)**

**(물음 1)**

다음 자료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A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상 “차가감 납부할 세액”의 계산에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아래의 <거래내역 (2006. 4. 1 ～ 2006. 6. 30)> 각 항목에는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다음의 양식에 따라 오류수정의 근거를 제시하고 오류수정 결과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면 양(+)의 값으로, 감소하면 음(-)의 값으로 표시하시오.

|  |  |  |
| --- | --- | --- |
| 관련자료 | 오류수정내역 | 납부세액  증감액 |
| ① | (오류수정의 이유와 올바른 계산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만약 오류가 없다면 ‘오류 없음’이라고 적으시오) | (납부세액 증가는 +,  감소는 -) |
| … |  |  |
| ⑧ |  |  |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수령되었으며 주어진 자료에 제시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① 직전 과세기간과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비율   |  |  |  |  | | --- | --- | --- | --- | | 구 분 | | 2005년 제2기 | 2006년 제1기 | | 과세사업 | 국내  매출액 | 20%(30%)주) | 30%(20%) | | 수출액 | 40%(40%) | 50%(40%) | | 면세사업 | 국내  매출액 | 10%(20%) | 10%(20%) | | 수출액 | 30%(10%) | 10%(20%) | | 계 | | 100%(100%) | 100%(100%) |   주) 괄호 안은 본사건물과 창고건물의 사용면적비율임  ② ㈜A는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③ 다음의 <거래내역(2006. 4. 1 ～ 2006. 6. 30)>에서 열거된 거래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상호 독립적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래내역 (2006. 4. 1 ～ 2006. 6. 30) >  ① 4월 16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본사건물(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계산하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재계산 하였음)을 1,00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신고서상 매출세액에는 2005년 제2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에 근거하여 산출한 매출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② 5월 1일에 20개월 할부로 상품(과세재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월 1일에 고객에게 인도하였다. 6월 30일까지 약정에 의하여 회수하기로 한 금액은 3,000,000원이나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5,000,000원이다.  ㈜A는 회수한 5,000,0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확정신고 시 5,000,000원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③ 6월 30일에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이 확정된 과세사업 부문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A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  |  |  |  | | --- | --- | --- | --- | | (단위 : 원) | | | | | 공급받은  사업자 | 재화 공급일 | 장부 상 매출채권가액 | 비고 | | ㈜B  (면세사업자) | 1999. 3. 1 | 132,000,000 |  | | 개인사업자 M  (간이과세자) | 2000. 9. 3 | 143,000,000 | 어음수취분 | | ㈜C  (영세율 적용  사업자) | 2001. 1. 8 | 110,000,000 |  | | ㈜D  (중소기업) | 2002. 2. 6 | 165,000,000 | ㈜D의 파산으로 대손증명서류 입수 불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2005년 제1기 말에 과세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10,000,000원에 취득한 수리설비를 2006년 5월 15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A는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1,000,000원을 당기 불공제매입세액으로 신고서에 반영하였다.  ⑤ 2005년 제2기 초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창고건물을 120,000,000원에 취득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그리고 ㈜A는 2006년 5월 30일에 이 창고건물을 100,000,000원(장부가액 90,000,000원, 간주시가 80,000,000원)에 처분하면서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을 거래징수하고 신고서에 반영하였다.  ⑥ 6월 25일에 단골 거래처인 ㈜B와 공급가액 5,000,000원에 해당하는 과세재화를 7월 1일에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B에 요청하여 6월 25일자로 공급가액 5,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확정신고서 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였다. 한편 이러한 거래 사실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⑦ 4월 22일에 수산물 원재료 200,000,000원을 면세로 공급받아 다음 용도로 사용하였다. 신고서 상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없다. 단, 위 <자료> ① 중 “면세사업 수출액”에 대해서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가정한다.   |  |  |  |  | | --- | --- | --- | --- | | 구 분 | 국내매출 | 수출액 | 계 | | 수산물 원재료 도매분 | 13,625,000원 | 20,625,000원 | 34,250,000원 | | 통조림제조에 사용분 | 33,875,000원 | 68,125,000원 | 102,000,000원 | | 기말재고분 |  | | 63,750,000원 | |

**세 법**

**제1교시**

**13/16**

|  |
| --- |
| ⑧ 2006년 제1기에 공급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6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A는 2006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동 금액의 1%인 6,000,000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단, ㈜A가 속한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20%로 가정한다. |

**(물음 2)**

다음에 제시된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에 대해 법 제32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금지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26조 제3항에서는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일정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간이과세자에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일정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필요성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의 납부세액 계산구조 차이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답안지 7줄 이내로 답할 것)

**- 끝 -**

**세 법**

**14/16**

**제1교시**

여 백

**세 법**

**제1교시**

**15/16**

여 백

**세 법**

**16/16**

**제1교시**

여 백